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0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7640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수천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66,127,734원 및 그 중 66,771,783원에 대하여 2018. 9. 12. 부터, 342,179,949원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1,353,114,061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각 2019. 4. 1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2018. 5. 15. 접수 제915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보증금액 1,530,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24.
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제1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제1보증서의 보증조건은 2016.
6. 24. 보증금액 1,368,000,000원, 보증기간 2017. 6. 23.로, 2017. 6. 22. 보증금액
1,360,000,000원, 보증기간 2017. 11. 29.로, 2017. 11. 29. 보증기간 2018. 5. 28.로,
2018. 5. 25. 보증기간 2018. 11. 27.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22. C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고, 피고 A은 C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한 2017. 11. 7.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제2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제2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제2보증서의 보증조건은 2017. 11. 7. 보증기간 2018. 2. 6.로, 2018. 2. 6. 보증기간 2018. 8. 6.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9. C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보증금액 115,200,000원, 보증기한 2018. 2. 6.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제3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제3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14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제3보증서의 보증조건은 2018. 2. 6. 보증기간 2018. 8. 6.로 변경되었다.

라.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보증료등 납부)

-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급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제12조(변제 등의 총당순서)

-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신보가 대신 지급한 비용, 보증료, 보증채무이행금, 대위변제수수료, 손해금, 위약금, 지연보증료 등의 순서로 총당하기로 합니다.

마.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바. C은 2018. 7. 26. 제1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채무에 대한 원금연체, 2018. 7. 27. 제2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채무에 대한 원금연체, 2018. 8. 7. 제3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채무에 대한 원금연체를 이유로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9. 18. D은행에게 제1보증서에 기하여 1,353,114,061원, 2018. 9. 17. 기업은행에게 제2보증서에 기하여 342,179,949원, 2018. 9. 12. E은행에게 제3보증서에 기하여 77,466,52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9. 18. C으로부터 10,694,740원을 회수하여 제3보증서에 기한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원고가 C 및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4,041,431원이다.

사. 피고 A은 2018. 5. 15. 자신의 형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2018. 5. 11.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3,77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구상금 채무를 포함하여 7,145,373,000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제1, 2, 3 보증약정에 기하여 1,766,127,734원[= 대위변제금 1,762,065,793원(= 제1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1,353,114,061원 + 제2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342,179,949원 + (제3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77,466,523원 - 회수금 10,694,740원)) + 확정손해금 20,510원(= 10,694,740원 $\times$ 7/365 $\times$ 연 10%, 원 미만은 버림) + 대지급금 4,041,431원] 및 그 중 제1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1,353,114,061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8. 9. 18.부터, 제2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342,179,949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8. 9. 17.부터, 제3보증약정에 기한 잔존 대위변제금 66,771,783원(= 77,466,523원 - 10,694,74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8. 9.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일인 2019. 4. 15.까지는 연 10%의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다3999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1 내지 3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C과 피고 A은 자력상태가 좋지 않아 신용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에 가까운 2018. 7. 26.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인지 여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5. 1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775,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근저당권자 D은행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 근저당권자 D은행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자 E은행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775,000,000원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금액 3,760,000,000원(= 960,000,000원 + 2,200,000,000원 + 6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

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당시 피고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형인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C 및 피고 A의 신규자금 유통을 위하여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유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유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유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유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

고 B가 C에게 2018. 2. 2. 10,000,000원, 2018. 4. 25. 9,710,074원, 2018. 5. 10. 30,000,000원, 2018. 5. 18. 17,000,000원, 피고 A에게 2018. 1. 2. 3,500,000원, 2018. 1. 16. 10,000,000원, 2018. 1. 17. 10,000,000원, 2018. 1. 22. 3,000,000원 및 7,500,000원, 2018. 1. 30. 25,000,000원, 2018. 2. 20. 15,000,000원, 2018. 2. 23. 5,000,000원, 2018. 2. 23. 5,000,000원, 2018. 3. 2. 3,500,000원, 2018. 3. 23. 10,000,000원, 2018. 3. 28. 10,000,000원, 2018. 4. 2. 4,500,000원, 2018. 4. 7. 3,500,000원, 2018. 4. 11. 3,000,000원, 2018. 4. 16. 5,000,000원, 2018. 4. 20. 50,000,000원, 2018. 5. 2. 3,500,000원, 2018. 5. 4. 1,200,000원, 2018. 5. 10. 20,000,000원, 2018. 5. 16. 5,000,000원, 2018. 5. 31. 3,500,000원, 2018. 6. 8. 500,000원, 2018. 6. 26. 3,500,000원, 2018. 7. 2. 1,500,000원, 2018. 7. 31. 3,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 피고 B가 C 또는 피고 A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B가 C 또는 피고 A에게 위 금원 상당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의 대여금액은 34,500,000원(= 17,000,000원 + 5,000,000원 + 3,500,000원 + 500,000원 + 3,500,000원 + 1,500,000원 + 3,500,000원)에 불과한바, 그 상당의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피고 B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까지 피고 A와 C에 자금을 빌려주는 등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윤지상

판사 김준영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아파트 H동(도로명 주소 : 서울 강남구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아파트

1층 1011.1495m²

2 내지 10층 각 984.8845m²

11 내지 12층 각 723.9931m²

옥탑층 69.9966(연 면적 제외)

지하1층 3233.2764m²

지하2층 3621.7096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강남구 F 대 9936.4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J호 철근콘크리트조 224.3836m²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936.4분의 114.9665. 끝.